

실무위원회 활동요약

지난 6월 8일 표준화위원회에서 TTA표준으로 가결된 13개 표준을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인 실무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 델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차회의(90. 7. 11) 제12차회의(90.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시험방법 검토 표준시험방법 검토완료
신용카드조리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회의(90. 7. 12) 제6차회의(90. 8. 25) 제7차회의(90.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토콜 검토 프로토콜 검토 프로토콜 검토
디지털전송방식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회의(90.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8kb/s신호규격 작성완료
화상전화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조정회의 개최 예정(90.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식별 설명 및 의견 교환 <p>참석자 : 김재균 교수 ETRI 금 성 삼 성 현 대 OPC</p>

체신부고시 제65호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 표준화를 위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1990년 7월 27일

체 신 부 장 관

전기통신 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표준화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표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신의 호환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세칙에 의하여 제정되어 체신부장관이 권고하는 표준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시행세칙의 표준화 대상은 전기통신 설비의 이용방식, 전기통신설비 상호간의 접속규격 및 전기통신기자재별 규격등 전기통신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장 전기통신표준심의회

제4조(전기통신표준심의회)

- ① 체신부에 전기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적합여부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2. 표준화를 위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기타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기통신분야의 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② 심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기중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의장)

-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선임한다.
- 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의장의 부재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 구성원 이외의 자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사무국)

-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무국은 한국통신기술협회에 둔다.

제8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안의 채택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서 접수
- ② 심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 ③ 확정된 표준의 자료관리

제9조(간사)

- ① 간사는 사무국 직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 수행, 회의록 작성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최를 요구할 때
 2. 체신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최를 요구할 때
- ④ 의장은 제3항 각호의 경우 회의 요구일 1개월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회의소집시는 위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최소한 회의 개최 1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의결)

- ① 표준의 적합여부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3장 표준화단체

제12조(표준화단체의 인정)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단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화단체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표준화를 목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을 것.
2. 표준화에 대한 참여가 개방되어 있을 것.
3.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의견수렴 방법절차를 준수할 것.
4.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13조(의견수렴)

- ① 표준화단체는 표준안을 서면질의 또는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
- ② 서면질의의 대상은 제작자, 사용자, 일반관심자를 포함한 단체와 개인등으로 광범위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표준화단체는 공중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소비자(소비자단체, 노동조합, 협회등), 연구기관(정부, 민간, 대학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개인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서면질의에 연속해서 2번 이상 답신을 하지 않은 자는 서면질의 대상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 ④ 표준화단체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의견수렴 대상자들에게 서면질의 용지와 함께 전달해야 한다.
 1. 표준의 목적과 기대효과
 2. 표준의 개발자의 이름과 주소
 3. 이 표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
- ⑤ 서면질의에서는 찬성, 의견이 있는 찬성, 이유가 있는 반대, 이유가 있는 기권(예 : 관심없음)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하며, 반대의 경우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가능하면 그 대안까지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 ⑥ 표준화단체는 반송된 서면질의 결과를 의견별로 정리하고 서면질의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서면질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 ⑦ 모든 의견수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장 표준제정절차

제14조(표준의 제정) 제12조에 의한 표준화단체는 표준 제정을 요청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의 목적과 기대효과
2. 이 표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
3. 다른 표준과의 관계
4. 의견수렴 결과

제15조(표준의 채택 및 효력발생)

- ① 심의회는 접수된 표준안에 대하여 표준적합 여부를 심의하여(표준의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한다)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신부장관은 심의회 심의결과에 의거,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공고된 표준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이의제기)

- 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표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및 관련 표준화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제기처리)

- ① 관련 표준화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서와 관련 표준화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이의제기된 표준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8조(표준의 개정 및 폐지) 표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장 표준번호부여

제19조(번호부여) 표준번호는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CCIs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처음 2문자에 KC를 부여하고 이하는 CCIs와 대응하도록 부여한다.
2. ISO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처음 2문자에 KI를 부여하고 이하는 ISO와 대응하도록 부여한다.
3. CCIs, ISO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KT를 부여하고 이하에는 4문자의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한다.

제6장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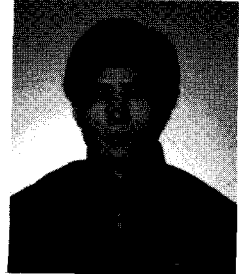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준화단체의 인정) 1989년 체신부 공고 제1호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표준화단체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서식 : 내용생략(필요시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진흥과 750-2324로 협조)

외부기고

ANSI(미국표준협회)활동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ctivity

이 동 철
ETRI 표준연구3실



I. 서론

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CCIs표준화조사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 8월8일부터 8월18일까지 관련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표준협회(ANSI) 정보기술표준 프로그램 매니저인 St. John씨의 초청으로 ANSI를 방문하게 되었다.

1918년 설립된 사설 비영리기구인 ANSI는 미국의 자발적인 표준활동을 지원하는 조정기구로서 미국의 국가표준 및 비정부 그리고 국제표준기구의 연구에 참여하는 미국과 동등한 위치의 단체로 공인된 민간 운용단체이다. 이 단체의 업무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ANSI의 분야별 연구활동

1. 자발적인 표준활동 조정 역할

ANSI는 국가의 조정관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단체로 표준에 대한 요구에 일치하기 위한 표준화기구를 포함하는 기구를 지원, 설정하며 중복 연구과제의 요구를 확인하는 회의에 대한 계획 및 기획을 설계한다. ANSI는 또한 표준에 관한 의견차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집회의 운용을 지원하고 필요절차 및 가용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12개의 표준분과로 구성된 실행표준 이사회 및 특별계획위원회는 ANSI가 이에 대한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효율적인 국가조정은 표준의 모든 분야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ANSI는 기술, 무역, 전문직, 노동 및 소비자기구, 정부관리인, 상업 및 공업에 종사하는 표준전문가의 연합체 역할을 한다. 이들 그룹은 표준에 관한 해결을 위해 승인용 표준을 제출하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NSI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ANSI는 비조약 국제표준기관의 미국 멤버이며, 그 기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화위원회(PASC) 등이 있다. 이와 같이 ANSI는 이들 그룹에 대한 미국의 참여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미국국내 표준승인

미국 국내표준의 하나인 ANSI는 그들 요구사항 및 여론을 만족시켜야 한다. ANSI의 표준조사부(BSR: Board of Standards Review)는 증거를 평가하고 그들이 직접 및 물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표준개발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표준규정에 대한 필연적인 일치(즉, 여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표준화는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개방처리 함으로써 개발되고 모든 사명에 대한 주의깊은 고찰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단, BSR이 만족하면 결정은 미국국가 표준으로 제안된 표준의 승인을 취한다.

1988년 말 거의 8,500개의 미국 국내표준이 있었다. 그들은 실질적인 모든 분야 및 훈련에서 생산품, 장비 소자 및 시스템의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정의, 정격, 부호, 시험방법, 안전에 관한 성능 요구 등을 제공한다.

3. 국제표준에서 미국 관심을 대표하는 곳

ANSI는 세계 주요 비정부 국제 표준 단체;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조정관 및 관리자역할을 수행한다. ANSI를 통해 미국 공업, 상업 및 기타 업무는 이를 국제 단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NSI는 ISO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거의 모두에 참여하고 300여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무국보다 더 많이 관리한다. 미국회사에 특히 중요한 것을 ANSI는 사무국에 제공하고 국제표준에서 정보기술분야의 연구를 관리한다.

4. 세계표준에 대한 정보 및 교류 제공

ANSI는 미국에서 표준이용도의 주요 근원지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승인된 미국국가표준, ISO 및 CCITT 권고의 포괄적 권고집에서 회원으로 유지된 87개 국가에서 국가표준기구의 규격, 공동시장에서 제휴한 지역기구의 제안으로 ISO 및 IEC의 승인 및 초안표준을 이용할 수 있다.

ANSI는 보충자료로 미국 국가표준의 연보를 출판한다. 주어진 목표(즉, 정보기술, 안전, 건강 등)에서 국제표준의 특별목록을 출판한다. ISO, IEC 및 50개 이상의 ISO 회원들에 의해 발표된 최신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ANSI의 격주출판물인 Standards Action의 승인을 위해 고려중인 표준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고 최신 발간된 표준을 보고한다. 1987년에 일반인에게 Standards Action을 통해 제안된 미국국가 표준 1,724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ANSI Reporter는 미국정부의 표준에 관련된 결의 및 ANSI, ISO, IEC 정책 수준 결정의 매체로 회원 및 일반인에게 알린다.

5. 정부의 협력

ANSI는 거의 70년동안 정부의 모든 수준과 같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20개의 연방, 주 및 지방운영회사는 ANSI의 회원이고 정부대표부의 몇몇은 ANSI의 집행부 및 이사회에 봉사한다. 1987년에 ANSI의 중역회의에 의해 승인된 정부위원 이사회의 탄생은 정부 및 ANSI간의 협력을 높이기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오랜 관계 때문에 ANSI는 자발적 표준의 정부수용을 고취시키는데 유효하다. 많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들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 통신 및 수송에서 정부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성취 목적으로 규칙에 대한 미국 국내 표준을 이용한다.

6. 조직 구성

ANSI는 자발적인 표준방식내에서 그러한 협력의 관심을 나타내고 단체의 정책을 통제하는 중역회에 의해 통솔된다. 3개의 대위원회(실행, 재정 및 국제 자문위원회)는 중역회의의 일부로 고려된다. 실행위원회는 ANSI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회의 기간중 중역회의로 행동한다. 재정위원회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국제정책 및 계획에 대해 중역회의에 조언한다.

중역회에 대한 보고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있다.

- 임원이사회 및 회사 이사회는 ANSI 프로그램에 그들 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들 회원과 유권자 그리고 ANSI 프로그램부 및 단체의 정책을 제공 및 표준을 위한 요구를 결정하는 도움을 준다.
- 소비자 위원회는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상품에 책임을 맡는다. 모든 소비자 표준조사 및 국가표준활동에서 소비자 이윤을 보호한다.
- 소위원회는 ANSI단체 및 이사회의 작용 반작용에 반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불평을 듣는다.
- 보증위원회는 보증프로그램의 국가 신임을 주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IEC의 미국국내 위원회는 IEC의 효율적인 참여 및 국제전기기술표준에 대한 미국의 위치를 개발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이 있다.
- 실행표준위원회는 ANSI에 의해 조정되는 표준화 활동을 관리한다. 운영절차를 발표하고, 표준연구에 신속한 완결을 모의 실험하고 국제기구의 기술연구에서 미국 참여를 조정한다.

- 실행표준위원회 산하에는 특별 표준단체가 운영하는 훈련 또는 동일기술 분야에서 표준개발에 대한 관리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실행표준위원회를 원조하는 8개 표준분과위원회가 있다. 이들 표준 단체는 음향, 건축, 전기 및 전자, 영상기술, 정보기술, 의용기술, 핵 및 안전의 훈련에 포함된다.
- 표준조사단체 여론은 고려중인 표준분야 및 표준 규정에 관한 필수적인 것중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때 미국국가 표준을 승인한다; 철회 및 재차 재정을 행한다.

부가적으로 ANSI는 여러 특별계획 및 표준활동의 조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이용한다. 공동전기통신 협동위원회 및 표준재정위원회(JTSCC)는 그들 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단일 협상 테이블에 모든 전기통신 표준화관련 개발자를 모으기 위해 전기 및 전자 표준 분과위원회 및 정보 시스템 표준분과의 협력적인 노력이다. 더우기, FOCC는 광섬유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

Ⅲ. 미국 표준의 승인과 폐지의 과정 및 기준

1. 적용성

이 요건은 미국표준의 승인, 개정, 재확인, 폐지에 대한 찬성을 얻기위한 활동에 적용된다.

2. 적절한 절차 요건

표준화 활동에서 적절한 절차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관심이 있는 자에게 의견을 표현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적절한 절차에서는 평등성과 페어 플레이가 허용된다. 다음은 찬성을 얻기위해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절한 절차 요건을 설명한다.

가) 공개성

원하는 자 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받음을 표시하는 모든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에 대해 부적절한 재정적 장벽은 없으며, 참여시는 조직 멤버십에 조건적일 수 없다. 기술 자격 또는 기타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이 있을 수 없다.

새로운 표준 또는 실제적으로 개정된 표준의 시작과 개발에 대한 시기 적절한 통고, 새로운 찬성을 하는 그룹 또는 여론조사 리스트가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관심있는 모든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고에는 제한된 활동의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의미있는 설명이 포함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지정해야 한다.

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직접 또는 물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 하나의 관심은 안전을 다루는 위원회 멤버수의 1/3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다.

(2) 하나의 관심은 제품 표준을 취급하는 위원회 멤버수의 과반수로 구성되지 못한다.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영향있는 관심자가 다른 견해에 대한 정하고 평등한 고려보다 표준개발 과정에 대한 편파적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편파성에 대한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다.

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주어진 표준 활동에서 찬성을 얻는데 적절한 관심 범위는 활동의 특성이며 활동에 의해 직접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관심사와 화합해야 한다. 표준 활동에 적절한 한 범위를 정의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1) 제작자
- (2) 사용자
- (3) 일반 관심자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세분을 해야한다. 적절한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아 표준 활동에 충분히 반영한다. 가능한 경우, 사용자 참가자는 절대적인 기술 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다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 참여는 조직의 개인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자 범위는 여러가지이다.

1) 사용자 - 소비자

의문시 되는 표준 활동에서 소비자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소비자의 견해가 고려되어 각 사용자 - 생산 또는 판매보다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의 의견과 통일되도록 한다.

2) 사용자 - 공업

의문시 되는 표준 활동이 변압기에 사용된 강철 또는 절연재와 같은 공업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사용자 참가자는 제품에 대한 산업상의 사용자이다.

3) 사용자 - 정부

의문시되는 표준 활동이 정부 기관 조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경우, 적절한 사용자 참가자는 정부 기관의 대표이다.

4) 사용자 - 노조

의문시되는 표준 활동이 미국 노동자의 특별한 관심이 되는 주제를 취급하는 경우(예, 작업 장소에 사용된 제품 또는 작업 장소 환경), 적절한 사용자 참가자는 노동조합이다.

라) 서류상의 절차

서류 절차는 표준 개발이 사용된 방법에 우선하며 관심있는 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마) 소송

서류상의 절차에는 조치 또는 반작용에 관한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불만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소송 제도가 포함된다.

바) 표준조치 리스트

미국 표준에 대한 제안 및 기존 미국 표준의 개정, 재확인, 또는 폐지 승인에 대한 제안은 “표준조치” 리스트를 위해 ANSI에 제출되어 대중 의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기간은 최소 30일이어야 하나 최대 60일이 된다. 표준조치에 대한 해설 리스트에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리스트를 제안 개발 단계에서, 표준 개발자의 선택으로 요청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미국 표준에 행한 실제적인 변경은 그 변경을 다시 리스트화 해야 한다.

사) 의견과 반대에 대한 고려

모든 참가자의 서류상의 의견과 반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에는 표준조치 리스트화 해야 한다. 제기된 반대안의 해결시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각 반대자에게 반대 성향 및 그 이유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반대 및 제안된 미국 표준에 행한 실제적인 변경 사항은 찬성 유도 그룹 또는 여론조사 리스트에 보고되어, 모든 멤버 또는 여론 조사 대상자에게 그 투표를 응답, 재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 표준 제안에 대한 고려

기존의 미국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새로운 표준의 개발에 대한 제안은 신속히 고려되어야 한다.

자) 기록

관련자 모두의 시간, 장소, 비용, 편리성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하여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관심있는 자에게 준비, 유지보수된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필수적은 아니다. 표준제안, 제안된 수정, 발표된 표준, 회의기록(토의에 대한 참석, 결정 개요를 포함), 투표용지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반대 성향, 새로운 표준의 개발과 기존 표준의 개정에 대한 적절한 자료에 대한 근본 이유 및 원칙, 보수 유지된 기록에는 발생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미국 표준의 채택, 재확인 또는 폐지후 일정기간(예, 5년)동안 보유되어야 한다.

3. 미국 표준의 승인 및 폐지 기준

가) 서 언

미국 표준의 승인은 적정 절차, 찬성, 승인 기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ANSI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승인은 각 미국 표준이 찬성 개발회의에 참여했던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관심있는 자에게 허용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보증한다.

나) 개 요

미국 표준으로서의 승인은 ANSI 이사회가 표준검토위원회(BSR)에 위임한다. BSR은 신규 또는 개정된 미국 표준, 미국 표준의 재확인, 미국 표준으로서의 승인 폐지안을 공인 조직, 위원회 또는 여론 조사자가 제출하였을 때 그 조치를 대신한다. 미국 표준으로 승인된 표준은 지정 발표되고 보수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절차에 맞게 적정 절차에 신경쓰지 않은 실제적 변경은 승인된 미국 표준이 될 수 없다.

다) 찬 성

찬성은 표준검토위원회의 판단으로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관심있는 자가 실제적 동의를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실제적인 동의란 과반수 이상이나 만장일치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찬성에는 모든 의견과 반대가 고려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BSR은 관심 범위에 있는자가 발표된 공식적인 투표로 적정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 찬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두어야 한다.

라) 승인 기준

미국 표준의 승인, 개정 또는 재확인 제안에 관해서 BSR은 다음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 (1) 적정 절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 (2) 찬성이 이루어 졌는지
- (3) 표준이 ANSI에 이전에 등록된 분야내에 있는지
- (4) 다른 미국 표준에 대한 충돌이 해결되었는지
- (5) 내용의 조화 및 복사에 대하여 다른 국내 표준을 조사하였는지
- (6) 제안된 미국 표준이 미국 기술 자문단의 관리자에게 제공되었는지
- (7) 표준 개발자에 대한 소송이 완료되었는지
- (8) ANSI 특허 정책이 적용되었는지

한편 BSR은 제안된 미국 표준이 일반의 관심과 상관이 없거나 불공평한 조항이 있거나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기술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제출된 이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BSR은 필수적이 아닌 경우, 기존 또는 제안된 미국 표준은 승인하지 않는다.

마) 폐지 기준

기존의 미국 표준에 폐지 제안인 경우, BSR은 다음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 (1) 적당한 절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 (2) 계속된 승인에 찬성이 부족하였는지
- (3) 미국 표준의 폐지에 대한 제안이 미국 기술 자문단의 관리자에게 제출되었는지
- (4) 제안 조치에 대한 소송이 완료되었는지

바) 폐지 기준(원인)

원인상 기존 미국 표준의 승인 폐지에 대한 제안인 경우, BSR은 다음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 (1) 다른 미국 표준과의 중대한 충돌이 아직 있는지
- (2) ANSI 특히 정책이 위반되었는지
- (3) 지정, 발표, 유지보수에 대한 ANSI 요건이 위반되었는지
- (4) 미국 표준에 대하여
 - a) 일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지
 - b) 불공평한 조항이 있는지
 - c) 기술적으로 부적합한지
 - d)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지
- (5) 표준 개발자에게 적절한 통고 및 승낙 기회를 주었는지

사) 승인 폐지에 대한 기타 기준

BSR은 다음 사항으로 미국 표준의 승인을 폐지할 권한도 있다.

- (1) 법적 증거에 기준한 위원회의 조언
- (2) BSR이 계속적으로 주의해 왔던 사실에 대한 고려

아) 최종 통고

표준에 대한 BSR의 최종 조치 통고는 “표준조치”에 발표된다.

IV. 결론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1430에 소재한 미국 국내 표준화 기구인 ANSI는 처음 생각한 커다란 기구라 생각하였는데 모든 업무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리 크지않은 공간에 자리잡은 곳이었다.

ANSI는 미국 표준을 담당하는 공인된 사설민간 운용기구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나타난 표준에 영향을 준다. 이곳에서 표준을 승인하기까지는 각 국가의 사무국에 우편으로 의견을 묻고 취합하여 ANSI의 각 SC별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모든 사실을 각 국가 사무국에 도큐먼트로 통보한다. 이곳에서 모든 문서들은 전산처리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시간적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의 사무국 및 의장, 부의장의 주소록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문기구의 설립은 물론 영국의 BSI, 프랑스의 AFNOR, 미국의 ANSI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시켜 보다 전문적인 표준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표준작성 실무위원회 위원명단 ◻

표준작성 노고에 대해 감사

전기통신 관련기술의 발전 및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TTA표준화위원회에서는 국내적으로 표준화가 시급한 13개 Item을 선정, 해당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각 실무위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작성된 TTA표준(안)이 이견수렴등의 절차를 밟아,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화위원회 의결을 득함으로써, 13개의 TTA 단체표준이 탄생하여 일반에게 공고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소속회사의 업무와 다름없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TTA 표준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아래의 13개 실무위원회 위원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TTA 표준화국 일동

❖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실무위원회 ❖

의 장	최광현	금성산전(주)	위 원	신대범	(주) 태 원
부위원장	이병조	대한전선(주)		박수철	풍성전기(주)
위 원	이명호	동양정밀공업(주)		정길선	한국전기통신공사
	우문균	삼성전자(주)			

❖ PC통신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안광표	(주)삼보컴퓨터	위원	이창원	부산의용촌 보훈복지공장
부의장	홍범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우경일	삼성전자(주)
위원	조광희	경성반도체(주)		차장환	(주)쌍용컴퓨터
	심준호	(주)글방컴퓨터		박선경	왕컴퓨터코리아(주)
	고덕진	금성반도체(주)		노홍식	(주)큐닉스
	서정식	(주)금성사		박상영	한국데이터통신(주)
	주현오	금성통신(주)		장진국	한국데이터통신(주)
	박준배	대영전자공업(주)		홍기중	한국전기통신공사
	양철주	대우통신(주)		서원균	한국전기통신공사
	정홍구	동서전자공업(주)		박애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배관일	동양나이론(주)		이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김현수	동양전자통신(주)		조국현	한국정보과학회(광운대학교)
	운여영	동양정밀공업(주)		이상래	현대전자산업(주)
	이구연	(주)디지콤			

❖ 코드없는 전화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정광욱	삼성전자(주)	위원	손영우	(주)한독
부의장	류성열	맥슨전자(주)		고재만	대영전자공업(주)
위원	안병윤	나우정밀(주)		권익주	한국전기통신공사
	공재식	대우통신(주)		구수옥	경원엔지니어링(주)
	전원해	금성통신(주)		김남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유재식	대우전자(주)		백희문	(주)홍양
	이조현	정풍물산(주)		박준순	동양정밀공업(주)
	이승배	현대전자산업(주)		정민영	(주)한창

❖ 키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최학중	삼성전자(주)	위원	박상규	대한전선(주)
부의장	박병민	대우통신(주)		박현열	동양정밀공업
위원	정병선	나우정밀(주)		유성열	맥슨전자(주)
	이선애	대승전자공업(주)		김형수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창주	대우전자(주)		심재민	현대전자산업(주)

❖ 구내교환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 장	강태원	한국통신진흥(주)	위 원	유상열	동양전자통신(주)
부의장	최용무	삼성전자(주)		배동화	한국데이터통신(주)
위 원	이만석	금성정보통신(주)		정창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노전용	나우정밀(주)		김형섭	현대전자산업(주)
	함경상	대우통신(주)			

❖ 장거리 자동전화 발신제어장치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 장	고창준	선진전자산업(주)	위 원	이창주	대우전자(주)
부의장	김형수	우성전자		권혁진	대우통신(주)
위 원	김재훈	금성통신(주)		한상용	삼성전자(주)
	안병운	나우정밀(주)		김형곤	한국전기통신공사
	김재련	대영전자공업(주)			

❖ 이동가입 무선전화 가입자 장치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 장	임명섭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위 원	이가형	삼성전자(주)
부의장	정옥현	금성통신(주)		김성락	한국전기통신공사
위 원	조양현	금성정보통신(주)		박수진	(주)한독
	송영섭	대영전자공업(주)		박현서	한진전자(주)
	문부근	대우통신(주)		나상택	현대전자산업
	강시호	대한전선(주)		박상권	(주)T.M.C.
	강대영	맥슨전자(주)		김한영	한국모토로라코리아

❖ 일반전화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한상용	삼성전자(주)	위원	홍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의장	류성열	맥슨전자(주)		박주환	금성통신(주)
위원	김석준	대우전자(주)		이조현	정풍물산(주)
	윤병석	동양정밀공업(주)		강건일	(주)오토론
	권준안	대우통신(주)		이영국	K.D.C 상사
	이연호	현대전자산업(주)		최범순	(주)홍양
	최연식	대한전선(주)		임상지	태흥정밀공업(주)
	박노평	한국전기통신공사			

❖ 인쇄전신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권영수	금성통신(주)	위원	최승병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의장	최길영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권성욱	현대전자산업(주)
위원	이윤수	광림전자공업(주)			

❖ 팩시밀리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이광복	대우통신(주)	위원	이두학	(주)한독
부의장	김재욱	금성정보통신(주)		채종진	한국전기통신공사
위원	홍범진	대우전자(주)		이윤곤	한국데이터통신(주)
	정진철	(주)일진		박상규	대한전선(주)
	문승렬	(주)금성사		김동명	현대전자산업(주)
	신성규	삼성전자(주)		이준우	(주)신도리코
	이창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이무희	(주)홍양

❖ 텔리텍스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한진수	현대전자산업(주)	위원	이남현	태림전자(주)
부위원장	이태훈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윤영세	광림전자공업(주)
위원	주현오	금성통신(주)		정부영	한국전기통신공사
	오영택	대영전자공업(주)			

❖ 국선접속용 인터폰장치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이태진	중앙전자공업(주)	위원	정하룡	정풍물산(주)
부위원장	진정학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인귀	대영전자공업(주)
위원	권영길	동성전기통신		정창선	(주)삼익세라믹
	신성우	한국통신(주)		신재철	현대전자산업(주)
	이지훈	금성통신(주)			

❖ 가입자 보호기 실무위원회 ❖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의장	문원길	우성전자	위원	박만휘	승산전자통신
부위원장	조석제	한국유통		이만용	옥정통신공업사
위원	김영찬	고려정밀		차상환	(주)재승
	김명식	광림전자공업(주)		차재완	정안전자산업(주)
	정경근	도요산업		김정관	조양전자
	안평래	신도산업		남홍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이승자	(주)이화엔지니어링		김수한	경문전자공업
	정병덕	한국전기통신공사		김용기	금성전기통신
	박영도	제일전기		김상규	단암산업(주)
	박병선	대원산업		임재원	승림통신
	김남범	우일전자통신		정진홍	신우전자
	오준환	금광통신		이청도	정명산업(주)
	정문수	봉산정밀		채수익	원광전기통신
	최상훈	삼성통신		김기상	일성산업사